

#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9
----------	----

제출연월일 : 2006년 10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물놀이장소에 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운영토록 정함(안 제3조)
- 물놀이장소의 안전시설·장비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수상구조대의 임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수상구조대원의 활동실비 지급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
- 수상구조대원의 보호, 치료·보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 제15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안전 확보 및 시민 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라 함은 사회단체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 하에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수상레저 안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 장소의 관리책임이 있는 도지사, 시장·군수, 기타의 공공 단체를 말한다.
5.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6.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 제2장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

②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당해 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갖추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영구역 표시
2.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3.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4. 순찰차량
5. 통신 및 방송시설
6.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6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기타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제7조(복제)** ①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수상구조대원은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한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
3. 기타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 3 장 수상구조대원의 모집·교육훈련 등

**제9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자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라. 기타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자

## 2. 수변안전요원

가. 사회단체 회원

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마. 기타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모집·선발)** ①소방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②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소방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임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4 장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활동실비 지급 등

**제12조(활동실비 등)**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14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치료와 보상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치료·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물놀이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소방기본법 제34조

- 제34조(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보호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방기본법시행령 제9조

- 제9조(구조대의 편성·운영)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한다
1. 일반구조대 : 화재·재난 그 밖의 응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서마다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자치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소방파출소에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구조대의 편성)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이하“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조대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 수상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 수난구호법 제6조~제9조 및 제20조~제27조

제6조(수난구호업무의 관할) ①해상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행하고,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②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수난구호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 보관·반환·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지급·징수 기타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 ①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람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일시사용 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박약자, 기타 신체장애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8조(중앙구조조정본부등의 설치) ①해상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조정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해양경찰서에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 또는 구조지부를 둔다.

③중앙구조본부와 구조본부 및 구조지부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구조대의 운영) ①구조본부 및 구조지부의 장은 수난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하천에서의 수난구조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조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는 수난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구조본부의 장은 효율적인 수난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에게 구조대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조 협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구조된 사람·선박·물건의 인계) ①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구조된 선박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과 사망자 및 구조된 선박·물건을 시장·군수에게 인계한다.

③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 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21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 또는 물건을 인계받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한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난선박의 선장·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 등" 이라 한다)나 물건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장등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1. 멸실·손상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2. 폭발물·가연성의 물건, 보건상 유해한 물건 기타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3. 보관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것

④시장·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등에게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①구조된 사람의 보호 기타 구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②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제24조(구호비용의 지급)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구호에 종사한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조된 선박의 선장등 및 선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②제1항의 "구호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조난된 선박등의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 기타 구조비용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자동차·토지·건물 기타 물건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3.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③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선박의 예항에 소요된 비용은 조난선박의 선장등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①구호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구호비용의 금액을 조난선박의 선장등에게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등에게 이를 환급한다.

제26조(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라 함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상"이라 함은 해수면 및 내수면을 말한다.
5. "해수면"이라 함은 바다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2조~제30조

제22조(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 소속기관에 편성한다.

제23조(출동수당) ①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교육, 훈련 및 홍보 등 포함)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은 1인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단,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출동대기의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활동비보조 등) ①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여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군은 관내 의소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6조(요양보상) ①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

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치료비는 소방공무원의 보수 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장애보상) ①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각각 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8조(장제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

제29조(유족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0조(재해보상 청구) ①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장을 경유,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